

서울고등법원

제 14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나55995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의 파산관재인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11가합60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하기61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1. 1. 5.에 한 부인결정 및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인권 행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인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하

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1행의 '2010. 10. 14.'을 '2002. 10. 14.'로 고치고, 3면 1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3면 12행의 '2004. 2. 28.'을 '2004. 4. 28.'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장차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 될 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부인하기 위하여는 그 사해성(채무초과의 사실)은 행위시에는 물

론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구체적으로는 사실심변론 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에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의 채권은 그 사해행위 이후에 개시된 파산절차에서도 여전히 파산채권자의 파산채권으로 존속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법은 고의부인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한 것이다.

나아가 사해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산초과 상태에서 한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그 편파행위 당시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러한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편파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것이나, 채무초과라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일반 채권자를 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이러한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8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은 2002. 10.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그 당시 우리은행은 □□□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 대출채권을 승계한 우리에프엔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회사가 파산채권자로 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 5. 7. 위 대출채권을 신용보증하였는데 위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04. 4. 28.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

한 후 파산채권자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위 증여 당시 장차 파산선고를 받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증여는 증여 당시의 채권자이자 장차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 될 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가 1996.경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의 소유인데 ◇◇◇가 딸인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만 사위인 □□□ 앞으로 해 둔 것이다. 따라서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는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소유가 아니어서 □□□이 직접 원고에게 2002. 10. 1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199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와 합의 아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 앞으로 마쳐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견종철

판사 이숙연

부동산의 표시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3층

다가구주택(9가구)

1층 164.72㎡

2층 164.72㎡

3층 164.72㎡

지층 164.72㎡

공유자 지분 3분의 1 임기화 지분 전부. 끝.